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 시행령 위임〉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3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정회용의원 등 50인
2. 제출일 : 2024. 9. 4.
3. 회부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략) ④·⑤ (생략)	----- ----- ----- ----- ----- -----그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 8.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2. 현행법의 내용

□ 현행법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¹⁾에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별표1]²⁾에서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5만원)·경조사비(5만원)·선물(5만원)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15만원)’은 설날·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 배(30만원)로 허용하고 있음.

- 제8조제3항제2호는 공직자등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예외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국민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규율을 위해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함.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완화하면서도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기간 및 가액이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3.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연혁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한도 >

구 분		최초시행	1차 상향	명절 한시조정	2차 상향	3차 상향
시행		'16.9.28	'18.1.17	'20추석 및 '21설	'22.1.5	'23.8.21
선물 가액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농축수산물 ·가공품	일상	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5만원
	명절	5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① (2015년 3월 법률 및 2016년 9월 시행령 제정) 2015년 3월 동 법 제정 시에는 제8조제3항이 현행법과 같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제정된 동 법 시행령 [별표 1]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규정함.

○ 2016년 9월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017년 설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5.8% 감소함.

< 2015년~2017년 품목별 설 선물세트 매출액 추이>

구분		농축산				가공식품 등	식품 전체
		쇠고기	과일	특작	계		
2017년	12.31~1.27.	62,347	52,488	9,384	124,219	276,130	433,325
2016년	1.11~2.7.	82,496	76,114	8,823	167,433	297,304	505,866
2015년	1.22~2.18	74,540	63,915	8,235	146,690	242,564	423,475
증감율 (%)	2017/2016	-24.4	-31.0	6.4	-25.8	-7.1	-14.3
	2016/2015	10.7	19.1	7.1	14.1	22.6	19.35

주) 농축산에는 쇠고기, 과일, 특작(버섯 등)이 포함되며, 식품에는 농축산 외에 수산, 가공식품 등이 모두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경제적 영향을 받는
농어업인을 배려하기 위해 2018년 1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5→10만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함.

- 상한액 조정이 농수산식품 선물 판매에 미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추석선물 판매량은
2017년 보다 49.6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③ (2020년 9월 및 2021년 1월 시행령 개정) 2020년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추석 기간 및 2021년 설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10→20만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각각 개정함.

○ 동 시행령 개정은 부칙을 통해 명절 전후 기간에는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하도록 함.

< 2020년 9월 시행령 >	
부칙<제31015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u>농수산물</u>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u>농수산물가공품</u>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으로 한다.	
[별표 1의2]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u>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u> 은 20만원 으로 한다.	

- 개정 적용 시기인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의 가액상향 효과를 살펴보면, 2020년 추석은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였고, 2021년 설날은 2020년 설날 대비 19%가 증가함.

<2020년 시행령 개정 효과 분석(유통업체 8곳 조사)>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억원)	농수축산물(A)					가공식품 등(B)	총계 (A+B)
	소계	축산	과일	수산물	기타 농축산물		
2019년	2,121	733	694	483	210	2,221	4,342
2020년	2,258	810	740	506	202	2,388	4,646
증가율	6.5%	10.5%	6.6%	4.7%	△4.1%	7.5%	7.0%

<2021년 시행령 개정 효과 분석(유통업체 14곳 조사)>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억원)	농수축산물(A)					가공식품 등(B)	총계 (A+B)
	소계	축산	과일	수산물	기타 농축산물		
2020년	3,438	1,027	975	780	656	1,210	4,648
2021년	4,137	1,265	1,201	938	734	1,407	5,545
증가율	20.4%	23.2%	23.2%	20.3%	11.9%	16.3%	19.3%

④ (2021년 12월 법률 개정)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추석 기간(설·추석 前 24일부터 설·추석 後 5일까지[총 30일])에 한해 두 배 상향(10→20만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 권익위는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 등 두 차례에 걸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였으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반부패 의지의 약화 등 반대 여론이 많음에 따라 2021년 추석 명절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음.

- 2021.9.6.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계속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³⁾

○ 이후 2021년 11월 「청탁금지법」 상 선물 등 가액 범위 조정과 관련한 의원발의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 법안 심의에서, 가액 상향 시기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익위에서 논의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추석 명절 전후에 한하여 2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

3) 2021.9.6. 뉴시스 “김 총리 ‘선물액 상향 시행령 개정 어려워...법을 바꿔야’”

⑤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상황 변화 반영 및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설·추석 기간 30만원, 농수산물 등 외의 선물가액은 5만원 유지)으로 상향함.

○ 개정 이후 2023년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2022년 추석 대비 4.7% 증가하였고, 명절 기간 한도 상향 대상인 20~30만원 대 선물은 1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청탁금지법 한도 3차 상향('23.8월) 효과 분석(하나로마트)>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매 출 액			
	'22년	'23년	증 감	성장률
30만원 초과 ~	4,607	3,535	△1,072	△23.3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6,833	7,807	973	14.2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3,966	4,397	431	10.9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3,989	4,371	382	9.6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20,053	21,891	1,838	9.2
3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10,911	10,081	△830	△7.6
3만원 이하	8,523	9,543	1,020	12.0
합 계	58,882	61,624	2,743	4.7

4.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배려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법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다른 품목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두면서도 기간 면에서 설날·추석으로, 가액 범위 면에서 두 배로 한정하여 규정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먼저, 현행 제도의 개정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기간 및 가액 범위를 완화하면서도 이를 법률에 규정한 취지는 공직의 청렴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농어업인 지원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4)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명절 기간 판매 비중은 품목에 따라 8~25%임. 예상할 수 없는 요인(집중호우, 장마, 가뭄 등으로 수급상황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으로 명절 기간에 높은 가격대의 농수산물 선물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시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제21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제391회, 20211118] 참조)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행법의 내용은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이라는 공익과 공직의 청렴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 사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에서 도출된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기간 및 가액 범위를 완전히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현행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품목의 선물 가액 기준을 법률에서 정할지 아니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